

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1976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다동공원은

무교·다동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으로

약 80%의 소유권이 확보되었음에도

주차장, 파출소 등 타용도로 활용되거나

일부 토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다동공원과 같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

장기미확보 정비기반시설을 빠르게 조성할 수 있도록

예산 투입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

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- 현행 조례에 따라 정비사업에 따른 현금기부채납은
도시·주거환경정비계정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- 도시정비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마련을 위해
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시설의 경우
도시재생기금을 선 투자하여 조기 조성하고,
사업 종료 후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현금 기부채납은
도시·주거환경정비계정에서 도시재생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
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도시·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세출 대상에
‘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기반시설에 선 지출된
도시재생기금 원금 전출’ 을 신설한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